

## 부산경상대학교 국가장학금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5
제정일자	2012.01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12.01.02.제정 2013.01.18.개정 2014.02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- 제1조(명칭)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8조(장학제도 등)와 한국장학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.)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(훈령)에 따르며,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국가장학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대학교"라 한다.) 국가장학금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자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국가장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수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3조(범위)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부 산경상대학교 국가장학금규정 시행세칙과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우수장학생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.
- 제4조(지원 대학 자격 및 지원 조건)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지원 대상의 자격을 가지며, 이에 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을 통한 자체 노력 의무를 가진다.
- 제5조(장학금의 종류) 국가장학금 종류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Ⅱ 유형으로 구분한다.
  - 1. 삭제 <2013.01.18.>
  - 2. 삭제 <2013.01.18.>
- **제6조(지원기간)** 재학 중 최대 총 4학기의 지원 자격을 가진다. 전공심화과정은 수업연한은 2 년으로 4학기의 지원 자격을 가진다.
- 제7조(수혜 대상 소득 분위 기준)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며, 국가 장학금 유형별 수혜대상 소득 분위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계획의 수혜대상 소득 분위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3.01.18.>
- 제8조(수혜 대상 성적 기준 일반원칙) 장학금 수혜자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의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3.01.18.>
- 제9조(수혜 대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

# 부산경상대학교 국가장학금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5
제정일자	2012.01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1. 외국국적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- 2. 휴학,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(현재 군복무자 포함)
- 3.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
- 4. 정규학기를 초과한 유급생
- 제10조(중복지원 방지) 등록금 범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하여 국가장학금 및 국가학자금 대출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.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확인과 범위는 국가장학금 규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.
- **제11조(국가장학금 반환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반환시기와 반환대상 금액은 국가장학규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.
  - 1.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
  - 2.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
- 제12조(개인정보 보호) 국가장학금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국가장학금 관리) 국가장학생의 관리(선정과 처리)는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- **제14조(일반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규정 시행세칙의 기준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"교육기본법 제28조(장학제도 등)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(훈령)"의 변경에 따라 변경의 사유를 가진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



# 부산경상대학교 국가장학금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25
제정일자	2012.01.02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